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가치와 발전방안

The Values of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Cultural Artistic Education Teachers and its Development Plan

권영임, 차수정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Young-Lim Kwon(kwomyounglim@hanmail.net), Su-Jung Cha(sjcha@sookmyung.ac.kr)

요약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위한 연구의 기초적 도움이 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강사풀 제도에서 현재 문화예술교육사로 발전해 온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연구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선행연구 및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적·사회적·교육적 가치, 현황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교육과정 및 연수교육의 발전방안, 자격 취득 및 취업관련 발전방안, 현장에서의 발전 방안, 근로조건 및 강사 처우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및 정책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개선 및 자격제도 | 문화예술교육사의 경제적·사회적·교육적 가치 | 문화예술교육사의 문제점 | 문화예술교육사의 발전방안 |

Abstract

This research has the meaning to be the basic help for the study of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cultural artistic education teachers, and it i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cultural artistic education teachers which has been developed from the teachers' pool system to the present cultural artistic education teacher system and to find the more systematic development plan. Thus, focusing on the advanced researches and materials regarding the cultural artistic education teachers, this research is to discover the economical, social and educational values and the plan to solve the present problems.

And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t suggests the development plans for curriculums and training course, qualification and employment, field experiences, working conditions and treatment of the cultural artistic education teachers.

■ keyword : | Concept and Policy of the Cultural Artistic Education | Improvement of the Cultural Artistic Education Teacher System and its Qualification System | Economical, Social and Educational Values of the Cultural Artistic Education Teacher | Problems of the Cultural Artistic Education Teacher | Development Plan for the Cultural Artistic Education Teacher |

I. 서론

통계청(2013)의 문화예술행사 종류별 관람률을 살펴 보면, 지난 2009년 전체 55%를 차지했던 문화예술이 2013년에는 63.4%를 차지하였고[1], 2014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예술 관람률이 71.3%로 증가하였다. 이는, 국민 10명당 7명이 문화예술을 즐겼음을 의미한다[2].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교육 부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강사풀(POOL)제도는 2005년에 예술강사 파견 사업으로 개칭[3]한 이후, 2015년부터는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용어로 계획을 발표하였다[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현재의 정부 정책 가운데 예술 전공자들의 취업 및 일자리 제공에 대한 문제점 해결의 실질적 정부 정책 방안이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자격제도이다[5].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사가 지니는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자들에게 주어지는 처우 문제는 심각한 수준(2013년, 월평균 138만원에 불과, 100만원 이하를 받는 강사가 1140명으로 전체 25% 수준)이다[6]. 따라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에 관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학위논문 8건 학술지 14건을 종합해 보았을 때 총 7개의 측면으로 분류된다.

① 현황 비교 연구(신영숙, 2015; 김현아, 2015; 박환석, 2014; 남기현, 2014; 이주연, 2012) ② 방향 및 전망 연구(김경민, 2013; 김영미 외, 2013; 남기현, 2013) ③ 교육 관련 연구로, 교육 만족도(이하나, 2015), 교과 현황(김수진, 2014), 교육학적 고찰(권정숙, 2013), 교육과정&운영 방향(윤명원, 2013; 선걸, 2013), 교육기관 및 평가기준 개발(박소연 외, 2013) ④ 현상학적 연구(김인설 외, 2014) ⑤ 자질 및 역량개발 연구(최종호, 2013; 정춘옥, 2013; 임학순 외, 2012; 강성룡 외, 2012) ⑥ 활성화 연구(박연지, 2015; 송미숙 외, 2013) ⑦ 법령 연구(오세근, 2008)로 분류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기초 기반 형성에 초점이 맞춰져, 전반적인 문화

예술사 자격제도의 흐름 파악 연구는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자격제도의 양적 규모는 확산되었으나, 질적 차원의 진행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경제적·사회적·교육적 가치와 일자리 변화 발전을 위한 연구의 기초적 도움이 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강사풀 제도에서 현재 문화예술교육사로 발전해 온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현실적 문제점에 적합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선행연구 및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적·사회적·교육적 가치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및 정책변화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교육이나 문화교육과 별개의 새로운 독립된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닌, 예술·문화·교육의 영역 안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해되어야 하는 개념이다[7]. 문화예술교육이란 용어가 정부 문서에서 나타난 것은 2003년 7월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 공동으로 지역사회문화기반 시설과 학교 간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회의의 한 계획서에서이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정책적인 용어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그 출발점은 1990년대까지 이어 온 문화정책이라 볼 수 있다[8]. 즉, 문화예술교육은 한국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급조된 신조어로, 학술적 측면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용어[9]이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예술교육의 틀에 문화개념을 추가한 형태이다[10]. 문화예술교육은 학교 중심의 예술교육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와 문화역량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을 알 수 있다.

1.1 도입기(2004-2006)

2000년도 초반부터 문화예술교육지원정책이라는 새

로운 정책적 시도가 일어난 시작점으로 2004년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담부서인 문화예술교육과가 설치하였고, 11월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이 마련되어 대외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였다[11]. 2005년 2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과 같은 해, 12월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12]. 지원법에 근거한 문화예술교육은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세분화 시켰으며,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강사정책의 명칭을 예술강사 파견 사업으로 개칭(2005)[3]하였고, 무용, 만화·애니메이션분야를 추가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 교재, 교수 학습 과정안, 지도서, 현황 보고서 등을 출판하였다[13]. 또한, 예술강사 파견 사업의 명칭이 예술강사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개칭(2006)[3]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하게 확대 되었다.

2004년-2006년은 한국문화예술교육정책의 도입기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에서 문화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이자,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강력한 정책의지[14]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정책이 제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 정착기(2007-2009)

2004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이 정책 영역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2007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은 각 사업이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15]. 특히, 학교에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2006년 대비 2배 수준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보다 많은 학교에서 혜택과 지원 방식을 다양화 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부분은 2007년 문화예술교육사업 중 가장 괄목한 성장을 이룬 영역으로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양적·질적 수준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15].

2008년 이명박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문화예

술교육 정책은 문화향수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등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영역을 확장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정책 협의로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2008년 2,200명 지원에서 2012년 5,000명으로 지원 확대 개편하여 예술 인력의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혜자로 하여금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초·중·고등학교 예술교육 현장에 예술강사 지원 규모를 확대시켰다[16]. 또한 2009년에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수혜 대상의 확장과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준비와 더불어 향유자 교육을 위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사업평가·조사·통계연구 등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17].

1.3 전환기(2010-2012)

2010년 5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는 예술교육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가치와 구현을 위한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의의로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다. 1차 대회(2006, 포르투갈 리스본)에 이어 2차 대회에서는 '21세기를 위한 창의성'을 통해 얻어진 실천적 논의를 통한 문화예술교육발전의 방안을 모색하였다[18]. 이를 계기로 초·중등학교의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의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확대 진행되고, 분야별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활성화에 기여, 16개 시·도 교육청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팀을 추가로 만들어 지원하였다[13]. 2012년에는 2006년 「문화예술지원법」 제정 당시에 주요 영역인 교수활동이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를 규정하였다[19]. 이와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중점적인 문화비전과 과제로 선정하여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과 차별성을 드러냈으며, '예술 뉴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였다[20].

1.4 2013-현재

2013년 새 정권이 시작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바탕으로,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국정목표로 삼고, 생애 주기별 문화향유 권리 보장, 문화 다양성 증진 등 문화예술 진흥기반을 확대하였다[21].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기조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함께 ‘문화 융성’이 제시되었다[22].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교육 부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강사풀 제도는 2000년 국악분야를 중심으로 시행되어[23], 2002년에는 연극분야, 2004년에는 영화분야[24], 2005년 3월에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분야로 사업이 확대되었고[25], 2000년부터 시행되어져 온 강사풀제의 용어가 2005년에는 예술강사 파견 사업, 2006년에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개칭[3]하였으며, 2015년 전까지는 예술강사라는 용어로, 2015년부터는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용어로 계획을 발표하였다[4].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 2에 따라 자격 취득한 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써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자격제도이다[5].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사는 국가가 법률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으로 이수과정을 통해 능력이 인정되었을 때 자격 취득이 가능한 능력 인정형 자격증이다[25]. 문화예술교육의 교육기관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8조에 따라 지정, 운영되는 곳으로 2015년에 들어서 13곳이었던 교육기관이 지정기관이 만료됨에 12개 기관으로 지정을 발표하였다[5]. 또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6년 3월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개선이 시행될 예정임을 밝혔다[26].

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및 교육과정

2016년 3월 1일부터 신고육과정으로 운영되는 다음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 공동 주관한 ‘국가공인 문화예술교육사 이렇게 달라 집니다’의 리플렛을 참조로 다음과 같이 제도 내용이 변경되었다.

표 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개정(신구 자격요건)

구 자격요건	신 자격요건
교육대학 원격대학 학점은행 학위 취득자 제외	원격대학 학점은행 학위 취득자 포함 *교육대학 제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취득에 있어 개정 전의 구 자격요건은 교육대학,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는 제외하였으나, 신 자격요건에서는 원격대학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까지 전공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학교나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활동했던 예술강사 자격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설정하였다[26].

2.1 1급 자격요건 및 교육과정

표 2.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제16조의2제1항 관련)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요건
가.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제1항 및 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 교육과정 이수 *5과목 이상 150시간

표 3.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분류	교과 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시간
구 교육과정	직무소양	1)문화정책 사례연구	90시간 (3과목 이상)
		2)예술경영(행정)	
		3)문제해결기법	
		4)문화예술교육 협력 및 파트너십	
		5)한국과 문화와 미의식	
예술교육 전문성		1)문화예술 교육과정 설계	90시간 (4과목 이상)
		2)문화예술교육사례 워크숍	
		3)예술치유	
		4)통합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5)공동체기반의 문화예술교육	
		6)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	
신 교육과정	직무역량	1)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정책	90시간 (3과목)
		2)문화예술교육 지원과 파트너십	
		3)문화예술교육 관리 실무	
예술교육 전문성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I, II	60시간 (2과목)

1급 자격요건의 변경은 없었으며, 교육과정 이수요건에서 기존의 7과목(180시간)을 이수 한 뒤 취득이 가능하였던 교육과정이 5과목(150시간)이수로 변경되었고 기획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과목으로 개편하였다[26]. 1급 교육과정의 중점사항으로는 기획, 분석, 평가에 초점을 두어 구 교육과정에서 보완되어 신교육과정에서는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I,II과목이 기획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2 2급 자격요건 및 교육과정

표 4.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제16조의2제1항관련)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요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대학 및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예술 관련 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교육과정 이수 (예술전문성 교과영역 제외) * 5과목 150시간 또는 10학점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급 교육과정 이수 * 15과목 600시간 또는 40학점
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학교 예술강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예술강사 연수과정 이수 * 140시간 이상 이수
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사회예술강사)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마.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이상 이수

2급 자격요건의 개편된 사항은 [표 4]과 같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다> 목

또는 <라>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6년 3월 31일까지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26].

표 5.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2016.03.01 시행)

분류	교과 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시간
구 교육과정	교수 역량	1)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평가 (선택 2과목)	60시간 (4학점)
		2)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선택 5과목)	150시간 (10학점)
	직무 소양	1)문화정책 및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문화 행사기획(선택 1과목)	30시간 (2학점)
2)커뮤니케이션기법, 예술교육 상담 (선택 1과목)		30시간 (2학점)	
예술 전문성	예술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 (10과목 이상)	450시간 (30학점)	
신 교육과정	직무 역량	1)문화예술교육 개론	30시간 (2학점)
		2)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 역량 교과목(3과목)	90시간 (6학점)
		3)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학습	30시간 (2학점)
예술 전문성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	450시간 (30학점)	

2급 교육과정의 내용은 [표 5]와 같으며, 기존의 19과목(48학점)이 15과목(40학점)으로 개정되어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전공자의 경우 기존의 9과목이 5과목(10학점)이수로 개정된다[26]. 또한 현장의 이해와 문화예술교육 철학 및 가치에 초점을 맞춘 교과목으로 개편하였다. 2급 교육과정의 중점사항으로 교수 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구 교육과정에서 보완되어 신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예술교육 개론,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의 과목이 문화예술교육 철학 및 가치를 학습할 수 있는 과목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2.3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개설 시, 교과목 적합여부 확인 요청 의무화(2016년 03.01 시행)

표 6. 신규 법령의 적합여부 확인 요청

구 법령	신 법령
교육과정 적합 여부 확인 요청 자율화	교육과정 적합 여부 확인요청 의무화

신·구 법령의 교과목 적합 여부는 [표 6]과 같다.

2016년 3월 1일부터는 대학 등의 각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적합한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확인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의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가공인 자격제도의 질적 관리와 교육기관의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함이다[26].

2.4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기관

표 7. 교육과정 운영기관

교육기관명	소재지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서울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인천
계명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대구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부산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경북 칠곡
한서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충남 서산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충남 금산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전북 전주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광주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광주
전북문화예술교육원 (사)전통문화마을	전북 완주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2013년에는 경일대학교 문화예술교육대학원을 포함하여 13개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2015년 1월 30일부터는 12개 기관으로 [표 7]과 같이 변경되어 지정되었다[26].

3.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선행연구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선행연구 분석은 [표 8]과 같으며, 총 7개의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표 8. 문화예술교육사 선행연구 분석

구분	저자(연도)	제목	
현황 비교	국내 사례 신영숙 (2015)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현황 중심으로	
	해외 사례	김현아 (2015)	한-프랑스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시스템 비교 분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정책을 중심으로
		박환석 (2014)	문화예술교육사의 활동영역 및 배치에 관한 연구
		남기현 (2014)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연구
		이주연 (2012)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정립을 위한 전문예술교육가(TA) 해외사례연구

방향 및 전망 연구	국내 사례	김경민 (2013)	문화예술교육사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해외 사례	김영미 외(201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와 전망
교육 연구	교육 만족도	이하나 (2015)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교육과정 참여자의 교육만족도 및 행동의도
	교과현황	김수진 (2014)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도입에 따른 대학 무용(학)과 교과현황 조사 연구
	교육학적 고찰	권정숙 (2013)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에 관한 교육학적 고찰
	교육과정&운영 방향	윤명원 (2013)	국악 전공자의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전략
	교육기관 및 평가준거 개발	선결 (2013)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방향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분야를 중심으로
		박소연 외(2013)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평가 준거 개발
현상학적 연구	김인설 외(2014)	예술가인가 교육가인가?: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증 취득희망자의 정체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자질역량 개발연구	최중호 (2013)	문화재교육사와 문화예술교육사의 자질과 역량,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정춘옥 (2013)	문화재교육사와 박물관 교육사: 자격, 직무, 역량, 비교	
	임학순 외(2012)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역량 개발방향 모색	
활성화 연구	강성룡 외(2012)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과 창의성	
	박연지 (2015)	무용전공자들의 문화예술교육사 시행에 따른 인식도가 활성화 지수에 미치는 영향	
법령연구	송미숙 외(2013)	문화예술교육 지원 단체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오세곤 (2008)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연구	

① 현황 비교 연구(신영숙, 2015; 김현아, 2015; 박환석, 2014; 남기현, 2014; 이주연, 2012) ② 방향 및 전망 연구(김경민, 2013; 김영미 외, 2013; 남기현, 2013) ③ 교육 관련 연구로, 교육 만족도(이하나, 2015), 교과 현황(김수진, 2014), 교육학적 고찰(권정숙, 2013), 교육과정&운영 방향(윤명원, 2013; 선결, 2013), 교육기관 및 평가준거 개발(박소연 외, 2013) ④ 현상학적 연구(김인설 외, 2014) ⑤ 자질 및 역량개발 연구(최중호, 2013; 정춘옥, 2013; 임학순 외, 2012; 강성룡 외, 2012) ⑥ 활성화 연구(박연지, 2015; 송미숙 외, 2013) ⑦ 법령 연구(오세곤, 2008)로 분류된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현황 비교 연구에서는 국내와 해외로 구분된다.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신영숙(2015)은 대전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예술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예술의 증대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 활성화시켜야 함을 제시하였다[27]. 해외사례를 기반으로 한 김현아(2015)는 프랑스 사례를 [28], 박환석(2014)은 미국, 영국, 프랑스 사례를[29], 남기현(2014)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핀란드, 오스트리아를 바탕으로[30], 이주연(2012)은 미국, 영국, 호주 사례를 바탕으로[31], 국내 제도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방향 및 전망연구에서는 국내와 해외로 구분된다.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김경민(2013)은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교육사 양성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논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32]. 김영미 외(2013)은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환경과 예술교육의 발전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전망하였다[33].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남기현(2013)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핀란드 등의 6개국의 해외 예술강사 사례를 통해 국내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할 것인지 논의하였다[34].

셋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교육 관련 연구로 교육 만족도의 연구에서 이하나(2015)는 서울·경기지역(C대학, E대학, I대학)에서의 교육과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25]. 교과 현황의 연구에서 김수진(2014)은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에 따른 대학 무용(학)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였는데 문화예술교육사 교과과정 개설 및 인정교과목이 미흡한 실정임을 보고하였다[35]. 교육학적 고찰의 연구에서 권정숙(2013)은 해외의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교육학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사의 배경과 법 제정, 제도를 살펴보고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조건과 양성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36]. 교육과정&운영 방향의 연구에서 윤명원(2013)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제도적 측면에 대하여 검토하고 교육과정의 중요 내용과 국악 전공자들의 문화예술교육사 과정 이수 전략을 제시하였다[37]. 선걸(2013)은 만화·애니메이션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방향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고 있었다[38]. 교육기관 및 평가준거 개발의 연구로 박소연 외(2013)은 평가준거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평가영역의 중요도와 가중치 등의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정책적 정의에 대한 명료함과 취득 희망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취득 희망자들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39].

넷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현상학적 연구로 김인설 외(2014)는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자격증 취득 이후 진출할 수 있는 활로가 담보되어야만 문화예술교육사의 개념과 정체성 확립이 실질적으로 존립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40].

다섯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자질·역량개발 연구로 최종호(2013)는 문화재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특성 비교, 자질과 역량 비교를 통해 문화재교육사와 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과 전략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41]. 정춘옥(2013)은 직무와 역량을 견주어 부족한 점을 제시[42]하였다. 임학순 외(2012)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체계 구축 방안으로 전문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실천역량 강화를 모색하였다[43]. 강성룡 외(2012)는 역량들 가운데 창의성 제고를 관점으로 창의성과 관련된 역량이 무엇인지 확인함으로써 창의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대안을 모색하였다[44].

여섯 번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로 박연지(2015)는 서울·경기지역의 대학생 무용 전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에 따른 인식도와 활성화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무용 전공자들의 취업률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45]. 송미숙 외(2013)은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여러 단체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이 단체들의 구체적인 문화예술교육 지원활동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사업을 질적 제고와 단체 간 단체 내 상호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언론매체의 지원과 참여를 제안하였다[46].

일곱 번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법령을 통한 연구로 오세곤(2008)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근간이자 토대로

그들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47].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제도가 시행 초기 단계임에 기초 기반 형성을 위한 연구들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사에 오기까지 흐름을 파악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양적 규모가 확산되어 이들의 질적 차원 체계에 있어 미흡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II.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문제점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축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강사들의 양정 팽창과 함께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크게 4가지 측면으로 분류되는데 교육과정 및 연수교육의 문제, 자격 취득 및 취업관련 문제, 현장에서의 문제, 근로조건 및 강사 처우의 문제점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선행연구 및 보도자료, 신문 기사 등의 자료를 통해 조사한 내용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문제점

분류	문제점	출처
교육과정 및 연수교육의 문제	교육과정 운영 기관의 부족	염지은, news1, 2014.09.19.
		이규성, 아시아경제, 2013.10.14.
		문화부, 2015.01.29.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부족	김태식, 연합뉴스, 2015.01.29.
		이동연, 문화연대 뉴스레터 문화뺑, 2012.04.
		권정숙(2013) 탁지현(2014)
폭넓은 연수교육 부족	이동연, 문화연대 뉴스레터 문화뺑, 2012.04.	
	권정숙(2013) 탁지현(2014)	
	강사들의 인력양성·자질·역량·유지관리 부족	이동연, 문화연대 뉴스레터 문화뺑, 2012.04. 예술강사 토론회 녹취록, 합형식 토론 발췌, 2012.09.12.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세미나실, 권정숙(2013)
자격 취득 및 취업 관련 문제	상당수 대학과의 연계(취업 프로그램) 및 인정교과목의 부족	염지은, news1, 2014.09.19. 김수진(2014)
	능력 인정형 자격증의 취업연계조사 불가	염지은, news1, 2014.09.19. 박환석(2014)
	고비용의	박현주, 아주경제, 2013.10.14.

자격 취득	이규성, 아시아경제, 2013.10.14.	
	김호일, 부산일보, 2014.12.18. 박장호, data news, 2014.12.17.	
자격증취득자의 일자리 제공의 부족	황보람, 머니투데이, 2014.03.07.	
	황보람, 머니투데이, 2014.10.07.	
	이규성, 아시아경제, 2013.10.14. 박현주, 아주경제, 2013.10.14.	
현장에서의 문제	학생들과의 관계 부족	홍승용 외(2015)
	학교 교사와의 협력 및 예술강사들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홍승용 외(2015)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3장 제16조
		탁지현(2014)
	교육 환경과 교재 도구의 부족	예술강사 토론회 녹취록, 이지향 토론 발췌, 2012.09.12.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세미나실.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2014 예술강사 지원 사업 지원 대상 학교 선정 및 지원계획' 홍승용 외(2015) 탁지현(2014)
근로조건 및 강사 처우의 문제	비정규직의 되돌이	박현주, 아주경제, 2013.10.14 이동연, 문화연대 뉴스레터 문화뺑, 2012.04. 예술강사 토론회 녹취록, 이지향 토론 발췌, 2012.09.12.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세미나실 고영지, 심광현, 더불어 함께 여는 방담회, 2012.12.24.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제외
	부족한 보수·초과근무 문제	홍승용 외(2015) 박현주, 아주경제, 2013.10.14.
		탁지현(2014)

첫째, 교육과정 및 연수교육의 문제로 교육과정 운영 기관의 부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부족, 폭넓은 연수 교육 부족, 강사들의 인력양성·자질·역량·유지관리 부족으로 나누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기준의 13기관에서 재지정이 만료되어 12개 기관으로 지정됨을 발표하였다[5]. 이는 현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2만 1197명[48]의 인원이 12개 기관으로 분포되어 운영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수도권의 쏠림 현상과 지방의 운영 기관은 폐강되는 등의 문제점은 앞으로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을 앞둔 예비 강사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이 불가능하면 타 지역 또는 다른 교육원으로 옮겨 해당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부족, 폭넓은 연수교육의 부족, 강사들의 인력양성·자질·역량·유지관리의 문제점은 기존의 교육연수와 평가 시스템을 통해 강사들의 교

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일반적인 장치는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좀 더 집중적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49]과 한 달 정도의 교육과정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현장 강사로 나가는 방식에 있어 이후, 자질과 역량에 직결하는 큰 기량이 발휘될지 다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된다.

둘째, 자격 취득 및 취업관련 문제로 상당수의 대학과의 연계(취업 프로그램) 및 인정교과목의 부족, 능력 인정형 자격증의 취업연계조사 불가, 고비용의 자격 취득, 자격증 취득자의 일자리 제공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으로 구분된다.

기사에 의하면 각 대학·교육원에서 문화예술분야 취업처 정보 정도만 제공되어 있으며, 취업 멘토링, 문화예술분야 산학협력, 취업세미나 및 특강 등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대학·교육원이 대부분이다. 특히 상당수 대학에서 기본적인 취업 정보 홈페이지조차 제공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48]. 또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제도 개선의 발표(2016.03.01)와 동시에 각 대학(학)과의 교과목 적합 여부 확인 요청의 의무화를 시킴에도 상당수 해당(학)과의 전공자들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여 자격제도 취득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능력 인정형 자격증이라는 문제점이 제기[48]되면서 문화예술교육사 취득자들의 인원, 잠재 취득자 인원, 1급 자격 취득자, 2급 자격 취득자들이 어떤 곳으로 취업이 연계되었는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업무 독점형(면허형) 자격증의 경우 해당 부처가 인력수급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절되는 반면 ‘능력 인정형 자격증’은 수급 계획 없이 일정 검정만을 통과하면 자격을 인정하여 자격 보유자를 과다 배출하는 결과를 낳으며 해당분야 종사자 희망자 또는 관련 전공자의 대부분이 소유한 자격은 노동시장에서 그 가치와 기능을 상실[29]하게 됨에 이후 문제점이 부각될 것이라 사료된다.

2016년 제도 개선에 있어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수강 강좌가 대폭 줄어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교 등 원격

대학과 학점은행계 학위 취득자의 전공 학력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 및 학점 은행제 학위 취득자도 예술 전문성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필요가 없어 300만원 정도의 비용 절감[50]과 예술 분야 졸업자의 경우 60만원의 비용부담 경감[51]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통해 취업을 장벽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비전공자들의 자격 취득의 확대로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자들에 대한 자질이 문제시될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해당(학)과 전공자에 대한 비용 절감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교육역량에 비례한 강사들의 자질 문제가 더 이상 문제시되지 않도록 전공자들에게 비용 절감의 혜택을 더욱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자격 취득자의 일자리 제공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은 2013년부터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가장 최근의 2014년 10월 기사를 참조로 살펴보았을 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일자리 없는 ‘백수 예술가’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시행된 이 제도로 새롭게 일자리를 얻은 예술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신성범 의원은 매년 자격증 소지자가 1700명가량이 배출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자격증만 획득하면 취업할 수 있을 것처럼 각종 홍보를 해놓고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52]. 이는 ‘스펙 쌓기 자격증[6]’, ‘장롱자격증[53]’, ‘저 임금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6]’를 문화예술계에 양산하는 꼴이 될 것이다.

셋째, 현장에서의 문제점으로 교육현장에서 학교 교사와의 협력 및 예술강사들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열악한 교육 환경과 교재 도구 부족의 문제점이 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은 학교 담당교원과 협력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협력은 교사하고 예술강사가 수업하는 동안에 학교의 다른 일을 하거나 토요 동아리 수업의 경우는 교사가 학교에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홍승용 외(2015)의 연구에서는 사진 분야의 예술강사 수업의 문제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경우, 교사 외에도 실기 교사, 전문 상담 교사, 사서 교사, 보건 교

사, 영어 교사, 산학 겸임 교사, 스포츠 강사 등 다양한 유형의 교사에 대한 자격기준이 제시된 반면, 예술강사의 경우 정확한 자격요건이 제시되지 않아 불안정한 보조강사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기에 학교 교사, 학생들 간의 인식부분에서 교육적 역할에 대한 정당성이 자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사진 분야의 경우 수업 외 학생 및 교원의 졸업사진 촬영 요구, 학교행사 사진촬영, 시험기간의 경우 담당교사 대신 시험 감독의 요구 등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학교에서 강사를 평가하여 수업시수 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부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무관심과 비협조적인 태도는 예술강사의 자존감을 떨어지게 하고 연간수업의 계획대로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게 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절실한 상황임을 알려 주었다[54].

또한 교육 환경에 있어 해당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의 의욕과 관심에 따라 지원과 아이들의 협조도 달라진다[55]. 무용의 경우, 실기실 또는 무용실을 제공하고 수업 진행에 필요한 오디오, 소모품, 교보재, 복사비, 그리고 강사의 대기실, 책상 등 교육활동의 편의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예술강사를 지원받는 학교의 의무화 함[56]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교육 환경과 교자재의 지원 부족에 불편함을 겪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었다.

넷째, 근로조건 및 강사 처우의 문제점으로 비정규직의 되풀이,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제외, 부족한 보수의 문제점이 있다.

강사풀 제도에서 부터 지금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제도가 오기까지 예술강사의 처우 문제는 그 문제점들이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었다. 이는, 비정규직이라는 커다란 장벽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강사들의 계약기간 체제에 있어 3월부터 10개월간 계약하는 방식으로 1-2월에는 급여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고[6], 이들을 고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강사평가에 의해 수업시수가 배정됨에 한 학교에서 지속성, 연계성 있는 교육을 시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문제는 교육과정 중에도 영향을 미쳐 연계성 있는 교육을 진행하

는데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다[57].

또한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제외, 비정규직의 지속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6], 부족한 보수 등은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강사들의 사기 저하와 강사들의 자질·역량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더 큰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클 것이라 예상된다.

수업시수와 시급에 있어 강사료는 수업시수 당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월평균 100만원 이상을 벌기 위해서는 연간 300시수 이상을 소화해야 하며[58], 홍승용 외(2015)의 연구에서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참여하는 연간 평균 시수로 201-300시수(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54]. 기사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월평균 138만원에 불과한 100만원 이하를 받는 강사가 1140명 전체 25%에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또한 연차 10년의 강사도 학교 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59], 이러한 문제점에 의해 많은 강사들이 예술강사 이외의 다른 직업을 연계하고 있었다.

IV.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가치 및 발전방안

문화예술교육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전공자를 위한 일자리 및 취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예술교육으로 예술인을 위한 국가자격제도로 문화예술 향유자를 개발하고 새로운 수용자 층을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사회적·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첫째, 경제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2014년 10월 8.0%, 2015년 1월 9.2%, 2015년 2월 11.1%, 실제 '제값 청년 실업률'은 22.9%~37.5% 달하는 IMF 외환위기 시절 1999년 이래 가장 심각한 실정이다[60].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어려움 속에 생겨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예체능 전공자들에게 취업의 일환인 일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긍정적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는 학교와 사회에서 국민에게 예술을 통해 예술교육을 체

험한 학생· 학부모 등이 문화예술이 특정한 사람들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 누구든지 체험하고 겪을 수 있다는 인식 제고와 더불어 미래의 소비자· 창조자를 양성하고 예술 옹호자를 양성한다는 관점에서 잠재 관객 개발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가치를 도모한다.

둘째, 사회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덕목인 '소통'은 문화예술이 도구가 되어 지역주민이 화합하고 미래세대에 가치로 전달하여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회와[61],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발휘한다. 미국의 경우 문화예술에 대한 효과성 연구가 2002년부터 본격화 시작되었는데[62], 문화예술 활동을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높은 시민참여 의식이 나타났다[63]. 문화예술을 통해 공동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과[64]와 문화예술의 참여를 통해 개인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 결함, 사회 권한 등 문화예술의 가치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65]. 또한 영국 문화부가 발표한 「문화와 스포츠 활동의 사회적 효과 연구」에 의하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빈도수가 6% 늘었고, 기부금액도 50파운드 증가하여 문화예술교육이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예술은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지역을, 사회를, 그리고 세상을 변화[66]시킨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셋째, 교육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교육사는 창의적인 교육으로 청소년의 가능성과 진로탐색을 돕고 소질· 적성을 발견하는 기회 제공과 더불어 문화· 예술을 넘어 사람을 이해하는 교육자[67]이자 창의성과 유연한 사고를 길러주고 올바른 인식을 키워주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68]적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한국의 대학입시만을 위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일방적 주입식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 시킬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발휘한다.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발전방안은 앞서 설명한 문

제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 및 연수교육의 문제로 교육과정 운영 기관의 부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부족, 폭넓은 연수 교육 부족, 강사들의 인력양성· 자질· 역량· 유지관리 부족 등에 대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운영 기관 부족에서의 문제점은 수도권과 지방의 쏠림 현상 폐강 현상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예산 지원을 확보하여 수강 강좌를 확대하고 각 대학과 연계된 교육기관운영을 더욱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예비 취득자들의 거주 지역을 파악하여 현재 개설되지 않은 운영 기관(제주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기도)에도 폐강 현상을 줄이고 개설을 확대 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 운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폭넓은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이후, 강사들의 인력양성과 현장에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중심 요소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과 한 달 정도의 교육과정 연수 프로그램을 받고 현장 강사로 나가는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교육 과정에 있어 교과와 비교과, 타 교과와 연계되어 지성-감성-인성교육의 연관관계 등의 폭넓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연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49]. 자격취득 이후에도 강사의 자질과 역량을 유지되며 더불어 통합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콘텐츠개발 및 우수사례 교수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교육 질을 최종 관리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체계적인 평가체제를 도입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강사들의 자질관리와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콘텐츠의 개발에 있어서 각 분야의 전문 학회, 세미나를 주최하여 전문가 회의를 반영한 교육콘텐츠 개발이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각 분야의 전문성이 중점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자격 취득 및 취업관련 문제로 상당수의 대학과의 연계(취업프로그램) 및 인정교과목의 부족, 능력 인정형 자격증의 취업연계조사 불가, 고비용의 자격취득, 자격증 취득자의 일자리 제공 부족 등에 대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일자리 제공이 어려운

예체능 전공자들과 해당(학)과의 관련 분야 예비 졸업자들 이외에도 취업률이 저조한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취업알선의 목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짐은 분명하다. 따라서 예술 전공자 주축의 취업 정보 차원에서 대학의 홍보를 의무화하고 예비 전공 졸업자들에게 문화예술교육사와 연계된 활동에 관한 긍정적 효과를 알리는 등의 취업 기회 제공에 더욱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능력 인정형 자격증의 취업률 조사 불가와 자격증의 과다 배출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가치와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점 등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면허자격증 또는 고용형 자격증으로 검토되어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2016년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개선 및 교육과정이 전면 개편되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지원한 많은 예비 강사들이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된다. 하지만 관련 전공자들에게는 우대조건 등이 더욱더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사의 취지배경인 예술전공자들에게 취업기회 제공에 벗어나지 않도록 관련 전공자들의 공연활동 및 연구 활동 또는 학과성적 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원 등의 교육과정 비용의 50%이상의 삭감 등의 혜택과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더욱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일자리 제공의 부족으로 겪는 문제점에 있어 정부는 강사들의 양적 확산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적절히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의 일환이 아닌 일자리 제공의 문제에 취지를 두고 예산을 확보하여 일자리 제공을 늘려야 한다.

셋째, 현장에서의 문제로 학교 교사와의 협력 및 문화예술교육사들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열악한 교육 환경과 교재 도구 부족의 문제 등에 대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현장에서 오는 문제점들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사기 저하와 자존감 상실 등, 직무환경에서 오는 문제점은 교육을 제공할 때 역량과 자질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3장 제16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69]」라고 제시된 바, 교육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

흥원 및 관련 부처는 학교 교사와 문화예술교육사가 협력 연수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더불어 협동 교육프로그램도 제시하여 시행에 옮겨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의 인식과 이들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정확한 자격요건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자들이 현장에서 위축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책으로 각 분야의 관련 전문 학회 및 세미나 등의 연구를 활성화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가치와 전문성, 교육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도 각 학교를 평가하는 평가제를 시행하여 학교 교사·학생·문화예술교육사의 윈만한 관계 와 예술교육에 대한 재인식이 요구된다.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2014 예술강사 지원 사업 지원 대상 학교 선정 및 지원 계획」에 의하면, 수업 진행 및 교육활동의 편의제공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예술강사를 지원받는 학교의 의무화 됨[56]에도 아직 현장과의 연계가 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이 제공되고 있었다. 따라서 각 학교의 기자재와 교육 환경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하여 주관 단체들이 학교 내 인프라 구성에 힘써, 원활한 환경에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근로조건 및 강사 처우의 문제로 비정규직의 되풀이,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제외, 부족한 보수의 문제 등에 대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의 되풀이의 문제는 단 시일 내에 정규직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행정적, 정책적 뿐 아니라 교육과정 전면 개편 등의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로 직결되어 더 큰 문제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강화, 체계적인 연수교육, 강사들의 자질·유지관리 등 교육력을 강화해야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사업비와 정규직화 추진에 따른 예산 증원을 포함해 예산을 확보하여 앞으로 정규직화로 변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대 보험에 있어서도 다른 취업자격증처럼 4대 보험에 대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에 관한 정책수립을 위해 조례제정을 통한 세부적인 검토로 처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강사들의 안정적인 계약기간 체제에 있어, 기존의 10개월의 계약기간을 20개월로 연장하여 우수평가를 받은 학교에서는 계약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강사들의 자발적인 강의개발 등의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는 방식의 특례사항을 만들고 수업시수 배정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수업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보수에 있어서 불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정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해당 관련 부처는 학력과 경력을 고려한 정당한 보수 인상을 해결해야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정책을 토대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조사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예체능 전공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문화예술이 특정한 사람들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 누구든지 체험하고 겪을 수 있다는 인식 제고와 더불어 잠재고객 개발을 활성화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둘째, 문화예술이 도구가 되어 안정된 삶의 영위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발휘한다.

셋째, 대학입시를 위한 교사와 학생의 주입식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 시킬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발휘한다.

이를 위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하나,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연수교육에 따른 문제점은 운영 기관과 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교육의 부족, 강사들의 인력·역량·관리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 운영 기관 부족의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 전국적 규모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또한 예비 취득자들의 거주 지역을

과약하여 현재 개설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 특히 개설되지 않은 지역인 제주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기도권에 수강 강좌를 확대 개설해야 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교육의 경우 기존의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응용하여 교육의 활용 기회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다양한 예술 분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성-감성-인성교육의 연관관계 등 폭넓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 연수되어 교사들 간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강사의 자질과 역량의 경우 의무화된 연수교육을 통해 단계별로 교육되며 1차적으로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2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응용, 활용하며 3차적으로는 서로 간의 정보교류 및 우수한 프로그램의 사례를 통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단계별로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강사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강사에게 교육의 특혜나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교육능력 개발에 대한 자율적인 강사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사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체제를 도입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여 강사들의 자질 관리와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둘, 자격 취득 및 취업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학의 인정교과목 부족과 취업연계조사 불가, 고비용의 수강, 취득자의 일자리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상당수의 대학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정교과목이 부족하였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대학의 인식 부족과 교육 반영의 부족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므로 각 대학들은 매 학기마다 예비 졸업자들에게 문화예술교육사에 관한 긍정적 인식 및 취업 기회 제공에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 교과목을 문화예술교육 인정 교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예술 인정교과목에 대해서는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제도를 통해 고비용을 들이지 않고 학점교류가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야 된다.

자격증 보유자의 과다 배출과 기능 상실의 문제점을 위해서는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사가 단순한 능력 인정

형자격증이 아닌 보다 높은 인정형 자격증인 면허자격증 또는 고용형 자격증으로 변환되도록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취득을 위한 수강비용이 고비용이므로 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증대는 물론, 예술 관련 공연활동이나 연구활동 또는 학과성적 우수자를 위한 수강비용의 50% 삭감 등을 도입하여 실제적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 외에 자격 취득자들의 일자리 제공 부족으로 겪는 문제점은 문화예술교육사를 희망하는 예술 전공자들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조직적인 사전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셋, 현장에서의 문제는 학교 교사와의 협력 및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학교 교사들의 인식부족, 열악한 교육 환경 및 교재도구 부족에 따르는 문제점으로 이에 대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학교 교사의 인식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은 학교 교사와 문화예술교육사 양자 간의 문제점을 제고하고 서로 교류하며 함께 통합적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장이 열려야 한다. 또한 각 예술 분야의 협회와 학회를 통한 세미나를 주최하여 문화예술교육사들이 현장에서 위축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전문가 회의를 반영하여 재인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또한 사후평가제를 시행하여 학교 교사·학생·문화예술교육사의 윈만한 관계와 예술교육에 대한 재인식이 요구된다. 열악한 교육 환경과 교재 도구의 부족 문제에 있어서는 각 학교의 기자재와 교육 환경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하여 주관단체들이 학교 내 인프라 구성에 힘써, 원활한 환경에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 근로조건 및 강사 처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비정규직의 되풀이, 4대 보험 제외, 부족한 보수 등에 대한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의 되풀이 문제는 많은 문제점들과 직결되어 더 큰 문제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강화, 체계적인 연수교육, 강사들의 자질·유지관리 등 교육력을 강화해야 하며 전문성을 높인 이후, 철저한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

4대 보험은 현재 취업률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이다. 이는 정부 정책에 관련된 문제로 다른 취업자격증 처럼 4대 보험에 대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한 세부적인 검토로 처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강사들의 안정적인 계약기간 체제에 있어, 기존의 10개월의 계약기간의 불안정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20개월로 연장하고 사후 우수 평가를 받은 학교에서는 계약기간의 혜택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또한 강사의 자발적, 자율적인 강의 개발을 위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 교육 개발의 효과성을 높이며 수업시수 배정에 있어 안정적인 수업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해당 관련 부처에서는 학력과 경력을 고려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보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정책이 한국 사회의 문화정책으로 수립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제도는 시행 초기임에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관련 부처에서 문화예술교육사의 문제점을 공동과제라 인식하고, 상호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된다면 현재의 많은 문제점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p aper.html>
- [2]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12월.
- [3] 김정선, *국악분야 예술강사 파견사업에 관한 비교 연구: 2004-2006 서울시 강사부분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4] 이정화,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5] 문화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12개 재지정’, 2015년 1월 29일.
- [6] 박현주, ‘<2013 국정감사>문화예술교육사 양성만 있고 일자리 대책 없어: 도종환 의원 자격증 80% 장롱자격을 될 우려’, 아주경제, 2013년 10월 14일.
- [7] 송미숙, *문화예술교육의 이론과 실제*, 레인보우북스, 2014.
- [8] 장기범, “배경과 실천에 기초한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정체성”, *음악교육공학*, Vol.11, pp.25-40, 2010.
- [9] 양현미, 정은희, 전효관, 박은영, 홍진표, 장용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 [10] 신승환,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지평*, 한길아트, 2008.
- [11] 문화정책백서, 2004.
- [12] 문화정책백서, 2005.
- [13] 김영순, 전영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내용 계열성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제6권, 제4호, pp.87-110, 2011.
- [14] 문화정책백서, 2003.
- [15] 문화정책백서, 2007.
- [16] 문화정책백서, 2008.
- [17] 문화정책백서, 2009.
- [18] 문화관광부 ·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대회 추진기획단, ‘The 2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보도자료, 2010.
- [1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주관) 문화체육관광부(후원) 김을동 국회의원(주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도입을 위한 공청회’, 2011.
- [20] 정재한,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사진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사진 문화예술강사제 도입을 준비하며”, *한국사진학회*, Vol.21, pp.99-111, 2009.
- [21] 김용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박근혜 정부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실천과제, 문화체육관광부, 2013.
- [22] 문화예술정책백서, 2013.
- [23] 짝은아, *한국전통음악교육의 철학적 토대와 교과과정 적합성 분석: 초·중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24] 민경원, “영화 강사들의 역사와 비전”, *모드니예술*, Vol.2, pp.211-223, 2009.
- [25] 이하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교육과정 참여자의 교육 만족도 및 행동의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26]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가공인 문화예술교육사 이렇게 달라집니다’ 리플렛, 2014년 12월.
- [27] 신영숙,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현황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28] 김현아, *한-프랑스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시스템 비교 분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정책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29] 박환석, *문화예술교육사의 활동영역 및 배치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30] 남기현,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31] 이주연,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정립을 위한 전문 예술교육가(TA) 해외사례연구”, *미술교육논총*, Vol.33, pp.267-286, 2012.
- [32] 김경민, “문화예술교육사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모드니예술*, Vol.9, pp.57-67, 2013.
- [33] 김영미, 김정미, 김성아, 최숙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와 전망”, *부산대학교 논문집*, Vol.34, pp.293-305, 2013.
- [34] 남기현, “해외 예술강사 사례를 통해 본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방향”, *예술교육연구*, Vol.11, No.3, pp.1-27, 2013.
- [35] 김수진,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도입에 따른 대학 무용(학)과 교과현황 조사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36] 권정숙,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에 관한 교육학적 고찰”,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Vol.8, No.3, pp.203-228, 2013.
- [37] 윤명원, “국악 전공자의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 이수진략”, 음악교육공학회, Vol.17, pp.227-242, 2013.
- [38] 선걸,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방향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분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39] 박소연, 임채홍, 박상현, 이주연, 김서용, 홍성만,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평가 준거 개발”, *한국조형교육학회*, Vol.46, pp.99-120, 2013.
- [40] 김인실, 박칠순, 조효정, “예술가인가 교육가인가? :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증 취득희망자의 정체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문화경제학회*, Vol.17, No.2, pp.185-216, 2014.
- [41] 최중호, “문화재교육사와 문화예술교육사의 자질과 역량,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박물관학보*, 25호, pp.79-100, 2013.
- [42] 정춘옥, “문화예술교육사와 박물관 교육사: 자격, 직무, 역량, 비교”, *박물관 학보*, 제25호, pp.5-24, 2013.
- [43] 임학순, 선걸,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역량 개발방향 모색”, *디지털 콘텐츠와 문화정책*, No.6, pp.169-192, 2012.
- [44] 강성룡, 이경화,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과 창의성”, *창의력교육연구*, Vol.12, No.2, pp.5-27, 2012.
- [45] 박연지, *무용전공자들의 문화예술교육사 시행에 따른 인식도가 활성화 지수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46] 송미숙, 김경은, “문화예술교육 지원 단체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무용연구*, Vol.31, No.2, pp.77-102, 2013.
- [47] 오세곤,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Vol.22, pp.5-37, 2008.
- [48] 염지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 수도권 집중…지방 폐강 속출’, *News 1*, 2014년 9월 19일.
- [49] 이동연, *문화연대 뉴스레터 문화빵*, 2012년 4월.
- [50] 김호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쉬워진다.’, *부산일보*, 2014년 12월 17일.
- [51] 박장호, ‘문화예술교육사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data news*, 2014년 12월 17일.
- [52] 황보람, ‘우리가 현실로…시행1년, 신규채용 전 무한 문화예술교육사, 머니투데이, 2014년 10월 7일.
- [53] 황보람, ‘학생 뺨 뜯는’ 예체능 교수, ‘키울 순 없어도 밟을 순 있다’, *머니투데이*, 2014년 3월 7일.
- [54] 홍승용, 손영호, 이주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사진학회지*, Vol.34, No.34, pp.77-94, 2015.
- [55] 이지향, ‘예술강사 토론회 녹취록’, *국회의원회관신관 2층 제1세미나실*, 2012년 9월 12일 am.10-1.
- [56]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2014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원대상 학교선정 및 지원계획’, 2013.
- [57] 탁지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예술강사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Vol.25, No.3, pp.17-43, 2014.
- [58] 박창욱, ‘문화예술교육사 80% 장동자격을 전락 우려’, *머니투데이*, 2013년 10월 13일.
- [59] 함형식, ‘예술강사 토론회 녹취록’, *국회의원회관신관 2층 제1세미나실*, 2012년 9월 12일 am.10-1.
- [60] 통계청, “2015년 2월 고용동향”, 2015년 3월 18일.
- [61] 최섯별, ‘이웃 간 소통의 부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극복할 수 있어’, *서울경제*, 2014년 11월 25일.
- [62] D. W. Pack, “Is art good for us?: Beliefs about high culture in american life, Lanham: Boulder: New Work; Oxford: Rowman&Littlefield Publishers, Inc,” *journal of communication*, Vol.54, No.1, pp.187, 2004.
- [63] James S. Caterall, Susan A. Dumais, and Gillian Hampden-Thompson, “The Arts and Achievement in At-Risk Youth: Findings from Four Longitudinal studies,” 2013.
- [64] S. S. Lowe, “Creating Community Art for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Vol.29, No.3, pp.357-386, 2000.
- [65] F. Matarasso, “Use or ornament?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rts,” 1997.
- [66] 이은영, ‘문화예술교육 받은 사람들, 봉사·기부 더 많이 한다’, *머니투데이*, 2014년 11월 24일.
- [67] 최섯별,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의 지원군, 문화예술교육사’, *서울경제*, 2014년 11월 18일.

[68] 장호영, '창의성과 올바른 인성 키워주는 문화예술교육', 시사인천, 356호, 2010년 9월 5일.

[6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http://www.moleg.go.kr/main.html/~paper.html>

저 자 소 개

권 영 임(Young-Lim Kwon)

정회원



- 2008년 6월 : 단국대학교 예술학부 무용학과 학사(한국무용전공)
- 2012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 석사(전통무용전공)
- 2013년 3월 ~ 2014년 8월 : 숙명

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육조교

- 2012년 9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 박사수료(무용학전공)

<관심분야> : 무용교육, 문화예술

차 수 정(Su-Jung Cha)

정회원



- 1994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무용학과(한국무용전공)
- 1997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체육학석사)
- 1999년 2월 : 명지대학 사회교육원 유아국악 지도자과 수료

- 2005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이학박사)
- 2005년 9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
- 2005년 12월 ~ 현재 : 순헌무용단 예술감독
- 2007년 1월 31일 ~ 현재 :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이수자
- 2015년 3월 ~ 현재 : 무용역사기록학회 부회장
- 2015년 1월 ~ 현재 : 한국춤협회 상임이사
- 2014년 3월 ~ 현재 : 한국무용예술학회 이사
- 2013년 3월 ~ 현재 : 우리춤협회 이사

<관심분야> : 무용교육, 문화콘텐츠, 무용공연분석